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년 2월 26일

회 사 명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대 표 이 사 : 조 용 병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 2가 120)
(전 화) 02-6360-3000
(홈페이지) <http://www.shinhangrou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IR팀장 (성 명) 박 철 우
(전 화) 02-6360-307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8기 정기)

(주)신한금융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이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2019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 2가 120번지)
신한은행 20층 대강당

3.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8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8명 선임)

제3-1호 의안 : 이사후보(기타비상무이사) 진옥동

제3-2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안순

제3-3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철

제3-4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변양호

제3-5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만우

제3-6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윤재

제3-7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필립 에이브릴

제3-8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허용학

제3-9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히라카와 유키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성재호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선임)

제5-1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이만우

제5-2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이윤재

제6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19년3월17일(일) ~ 2019년3월26일(화)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8. 기타사항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 | | | | | | | | | | | | 비상인 이사 | | |
|-----------|------------|-----------------------------------------------------------------------------------------------------------------------------------------------------------------------------------------------------------------------|----------------------|-----------------------|-----------------------|-----------------------------|------------------------------|-----------------------|-----------------------|-----------------------|-----------------------|-----------------------|-----------------------|----------------------|----------------------|-----------|-----------|------|
| | | | 박철 (출석률: 100%) | 이상경 (출석률: 100%) | 이만우 (출석률: 100%) | 허리키와 유기 (출석률: 92%) | 필립 에이브릴 (출석률: 100%) | 이성량 (출석률: 100%) | 이정일 (출석률: 100%) | 이근야 (출석률: 100%) | 박안순 (출석률: 100%) | 주재성 (출석률: 100%) | 김화남 (출석률: 100%) | 박병대 (출석률: 70%) | 최강욱 (출석률: 90%) | | | |
| | | | 찬성 100% | 찬성 100% | 찬성 100% | 찬성 92% | 찬성 100% | 찬성 100% | 찬성 100% | 찬성 100% | 찬성 100% | 찬성 100% | 찬성 100% | 찬성 100% | 찬성 70% | | 찬성 90% | |
| 1 (임시) | 2018.02.07 | 1. 제17기(2017.1.1~2017.12.31) 결산에 관한 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 그룹 경영진 등 장기 보수에 관한 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임시) | 2018.02.20 | <보고사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2) 2017년도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3) 2017년도 그룹 경영계획 연간 추진실적 보고 4) 카드 글로벌 사업 추진 보고 5) 2017년 4/4분기 그룹시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1. 지배구조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정기) | 2018.02.21 | <보고사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2. 신한데이터시스템 해외 자회사 설립 검토(안) 보고 3. 2018년 시행 주요 회계기준 보고 4. 2017년도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 보고 5. 2017년도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 보고 6. 2017년도 내부통제 체계·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1. 이사회추보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 -(주) | 찬성 | -(주) | -(주) | -(주) | -(주) | -(주) | -(주) | -(주) | -(주) | -(주) | -(주) | -(주) | -(주) | -(주) | -(주) |
| | | 2. 이사회소 횡도 승인에 관한 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3.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에 관한 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1. 이사회 의장 선임에 관한 사항 | -(주)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 | | | | | | | | | | | | 비상임 이사 | | | | | | | | | | | | |
|-----------|------|-------------------------------------------------------------------------------------------------------------------------------------------------------------|----------------|-----------------|-----------------|--------------------|---------------------|-----------------|-----------------|-----------------|-----------------|-----------------|-----------------|----------------|----------------|--------|----------------|----|----|----|----|----|----|----|----|----|----|--------|
| | | | 박철 (출석률: 100%) | 이상경 (출석률: 100%) | 이만우 (출석률: 100%) | 히라키와 유키 (출석률: 92%) | 필립 에이브릴 (출석률: 100%) | 이성량 (출석률: 100%) | 이정일 (출석률: 100%) | 이훈야 (출석률: 100%) | 박안순 (출석률: 100%) | 주재성 (출석률: 100%) | 김화남 (출석률: 100%) | 박병대 (출석률: 70%) | 최경록 (출석률: 90%) | | 위성호 (출석률: 92%) | | | | | | | | | | | |
| | | | 찬반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임시) | | 2. 소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3. 이사 보수에 관한 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4. 상각형 조건부지본증권(신종) 발행에 관한 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5. 「그룹내부통제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2. 사외이사회도 운영 관련 보고 3.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사업 추진 보고 4. 신한생명 CA사회사 설립 추진(인) 보고 5. 2017년 신용정보관리·보유인 업무수행실적 보고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 5 (정기) | | 1. "신한상표 등" 사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의결권 제한 |
| | | 2. 그룹 경영진 장기보수에 관한 사항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3. 지배구조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보고사항> 1.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2. 2018년도 1분기 결산실적 보고 3. 2017 사업연도 그룹사 배당결과 보고 4. 2018년 1/4분기 그룹시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출석 |
| | | 1. 외화 상각형 조건부지본증권(신종) 발행에 관한 사항 2. 전임 경영진 장기보수 처리에 관한 사항 3. 전임 부부장 장기보수 처리에 관한 사항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임시) | | <보고사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2. 상각형 조건부지본증권(신종) 발행결과 보고 3. 신한금융투자 PF 설립 및 업무진행시원 등록(인) 보고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퇴임 | 출석 |
| | | 1.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 주요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3. 전자단기채 발행안도 승인에 관한 사항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4. 채관발행 일괄신고서 신규 제출에 관한 사항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 | | | | | | | | | | | 비상임 이사 |
|------------|------------|--------------------------------------------------------------------------------------------------------------------------------------------------------------------------------------------------------------------|-------------------|--------------------|--------------------|-----------------------|------------------------|--------------------|--------------------|--------------------|--------------------|--------------------|--------------------|-------------------|--------|
| | | | 박철 (출석률: 100%) | 이상경 (출석률: 100%) | 이만우 (출석률: 100%) | 히라키와 유키 (출석률: 92%) | 필립 에이브릴 (출석률: 100%) | 이성량 (출석률: 100%) | 이정일 (출석률: 100%) | 이훈야 (출석률: 100%) | 박안순 (출석률: 100%) | 주재성 (출석률: 100%) | 김화남 (출석률: 100%) | 박병대 (출석률: 70%) | |
| 찬반여부 | | | | | | | | | | | | | | | |
| 7 (임시) | 2018.08.16 | 5. 지회사 자금지원 한도인용 및 지원사유 변경에 관한 사항 <보고사항> 1.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2. 그룹 홍콩 네트워크 Restructuring(안) 추진 보고 3. 외화 상각형 조건부보증권(신종) 발행결과 보고 4. 부동산신탁업 진출 관련 보고 5. ING생명 인수 추진 보고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 (정기) | 2018.08.17 | 1. 상각형 조건부보증권(신종) 발행에 관한 사항 <보고사항> 1. 2018년 상반기 결산실적 보고 2. 2018년 상반기 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 3.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4. 2018년 2/4분기 그룹시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5. ING생명 E(내재가치, Embedded Value) Valuation 보고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 (임시) | 2018.08.06 | 1. 오렌지리프트(플라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지분 인수에 관한 사항 2. 자사주 취득에 관한 사항 <보고사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0 (임시) | 2018.10.17 | <보고사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2. 주요 이슈 보고 3. 제주은행 보통주 유상증자 참여 보고 4. 신한DS 출자 지원 보고 5. 오렌지리프트 지회사 편입 승인신청 관련 사항 보고 6. 부동산신탁업 진출 관련 추진 경과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1 (정기) | 2018.10.31 | 1.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지분인수에 관한 사항 <보고사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2. 2018년 3분기 결산실적 보고 3. 5대 잠재리스크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및 대응방안 4. 상각형 조건부보증권(신종) 발행결과 보고 5. 2018년 3/4분기 그룹시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 이사회운영위원회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동내역 | | |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 이사회운영위원회 | [2017년 3월 ~ 2018년 3월] * 위원장: 조용병 * 사내이사위원: 조용병 * 사외이사위원: 박철, 이만우, 이흔아, 주재성 | 2018.03.22 | 1.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호선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05.18 | 1. 이사회사무국 성과평가 개선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12.21 | 1. 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 가결 |
| | [2018년 3월 ~ 현재] * 위원장: 조용병 * 사내이사위원: 조용병 * 사외이사위원: 박안순, 이만우, 이성량, 최경록 | | | |

(2) 위험관리위원회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동내역 | | |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 위험관리위원회 | [2017년 3월 ~ 현재] * 위원장: 주재성 * 사외이사위원: 주재성, 박철, 이흔아, 필립 에이브릴 [2017년 3월 ~ 2018년 12월 25일] * 위원장: 주재성 * 사외이사위원: 주재성, 박철, 최경록, 필립 에이브릴 [2018년 12월 26일 ~ 현재] * 위원장: 박철(직무대행) * 사외이사위원: 박철, 최경록, 필립 에이브릴 | 2018.2.20 | <보고사항> 1) 2018년도 그룹 국가별 위험분석 및 익스포저 한도 설정 보고 2) 2018년도 중점관리영역 그룹 익스포저 한도 설정 보고 3) 2017년 4분기 정기 보고 사항 4) 생산적 금융 관련 규제 개편에 따른 그룹 영향 및 대응방안 5) 바젤III 규제개혁 완료에 따른 주요 내용 및 그룹 영향도 분석 | - |
| | | 2018.3.22 | <심의사항>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발행에 관한 | 가결 |
| | | 2018.3.22 | <결의사항>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5.17 | <심의사항>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발행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결의사항> 1) 그룹 트레이딩 정책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2)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공시 변경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8.17 | <보고사항> 1) 2018년 1분기 정기 보고 사항 2)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결과 3) 그룹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4)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결과 보고 | - |
| | | | <심의사항>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발행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8.17 | <결의사항> 1) 2018년 지주회사 유동성 리스크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보고사항> 1)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 2) 2018년 2분기 정기 보고 사항 | - |
| | | 2018.9.5 | <심의사항> 1) 오렌지라이프(舊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지분 인수에 관한 사항 2) 자사주 취득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10.30 | <심의사항> 1)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지분 인수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심의사항> 1) 위험관리위원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결의사항> 1) 그룹리스크관리규정 및 그룹리스크협의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2019년도 최소자기자본비율 설정에 관한 사항 3) 2019년도 리스크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 가결 |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동내역 | | |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 | | 2018.12.11 | 4) 그룹 통합위험사항분석 결과 및 이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및 비상조달계획 5)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 - |
| | | | <보고사항> 1) 2018년 3분기 정기 보고 사항 2)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3) 그룹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 4) 그룹 내부등급법 신용평가모형 정기 적합성 검증 및 RC 사후검증 결과보고 5) 그룹 부도관리시스템 정기 적합성검증 결과보고 6) 그룹 TE/RWA 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완료 보고 | |
| | | 2018.12.21 | <심의사항> 1. 투자자문 자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 | 가결 |

주) 주재성 사외이사위원은 2018년 12월 26일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하였습니다.

(3) 보수위원회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동내역 | | |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 보수위원회 | [2017년 3월 ~ 2018년 3월] * 위원장: 이성량 * 사외이사위원 : 이성량, 이상경, 필립 에이브릴 | 2018.02.07 | 1. 2017년도 그룹 CEO 전략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2. 2018년도 회사/자회사 경영진 성과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3. 2018년도 회사/자회사 경영진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4. 그룹 경영진 등 장기보수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5. 2018년도 자회사 이사보수한도 승인에 관한 사항 | 가결 |
| | [2018년 3월 ~ 2018년 12월 20일] * 위원장: 박병대 * 사외이사위원 : 박병대, 박철, 주재성 | 2018.02.21 | 1. 2018년도 회사 경영진 성과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2. 2017년도 회사/자회사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안)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3. 2017년도 보수체계 설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가결 |
| | [2018년 12월 21일 ~ 2018년 12월 25일] * 위원장: 박병대 * 사외이사위원 : 박병대, 박철, 주재성, 이만우 | 2018.03.22 | 4. 2017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 가결 |
| [2018년 12월 26일 ~ 현재] * 위원장: 박병대 * 사외이사위원 : 박병대, 박철, 이만우 | 2018.05.17 | 1. 그룹 경영진 장기보수에 관한 사항 | 가결 | |

주) 주재성 사외이사위원은 2018년 12월 26일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하였습니다.

(4) 감사위원회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동내역 | | |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 | | 2018.01.19 | 1. 감사팀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02.07 | 1. 자회사 등의 감사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보고 및 심의사항> 1) 2017년도 감사업무 추진 실적 보고 2) 2018년도 감사팀 예산 계획 및 2017년도 집행 실적 보고 3)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보고 4) 2018년도 자회사의 감사계획 점검 보고 5) 감사업무 관련 보고 6)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7) 그룹 준법감시인 2017년도 활동결과 및 2018년도 활동계획 보고 | 보고 |
| | | | 1. 제17기 결산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2. 2017년도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가결 |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동내역 | | |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기결 여부 |
| 감사위원회 | <p>[2017년 3월 ~ 2018년 3월]</p> <p>* 위원장: 이만우 * 사외이사위원: 이만우, 이상경, 이성량</p> <p>[2018년 3월 ~ 2018년 12월 25일]</p> <p>* 위원장: 이만우 * 사외이사위원: 이만우, 이성량, 주재성, 박병대</p> <p>[2018년 12월 26일 ~ 현재]</p> <p>* 위원장: 이만우 * 사외이사위원: 이만우, 이성량, 박병대</p> | 2018.02.20 | 3.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4. 2018년도 감사팀장 업무성과 목표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02.21 | <보고 및 심의사항> 1) 2017년도 경영진의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보고 2) 2018년 시행 주요 회계기준 보고 3) 2017년도 감사위원회 활동 평가 보고 4) 2017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 5)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6) 2017년도 외부감사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감사 결과 보고 7) 2017년도 외부감사인의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보고 | 보고 |
| | | | 1. 제17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03.22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호선 및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2.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04.04 | <보고 및 심의사항> 1) 그룹 내부통제규정 개정 보고 | 보고 |
| | | | 1. 2018 회계연도 그룹회계감사보수 한도 승인에 관한 사항 2. 2018년도 감사팀장 업무목표 수정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05.18 | <보고 및 심의사항> 1)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보고 2)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3) 2018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계획 보고 | 보고 |
| | | | 1. 외부감사인과 회사와의 비감사 계약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08.16 | <보고 및 심의사항> 1) 2017년도 외부감사인의 재무보고내부통제 감사 결과 보고 2) 2018년도 1분기 외부감사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 보고 |
| | | | 1.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11.22 | <보고 및 심의사항> 1) 감사위원회규정 등 개정 보고 2) 2018년도 상반기 감사업무 추진 실적 보고 3)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4) 개정 외부감사법 관련 준비 현황 보고 5)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 평가 관련 개선 방안 보고 6) 감사업무 관련 보고 7) 2018년도 상반기 그룹준법감시인 활동 결과 보고 8) 2018년도 상반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 보고 |
| | | | 1.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12.12 | <보고 및 심의사항> 1)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른 자회사 외부감사인 선임 계획 보고 2)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3) 감사업무 관련 보고 4) 2018년도 3분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 보고 |
| | | | 1. 재무보고내부통제규정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12.20 | <보고 및 심의사항> 1) 2018년 그룹 재무보고내부통제 중간평가 결과 보고 2) 감사위원회규정 개정 보고 3)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 보고 |
| | | | 1. 2019년도 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가결 |
| | <보고 및 심의사항> 1) 2018년 그룹 재무보고내부통제 중간평가 결과 보고 2)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 보고 | | |
| | 1. 2018년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2. 2018년도 감사팀장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 3. 2019회계연도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감사 계약 승인에 관한 사항 | 가결 | |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동내역 | | |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 | | 2018.12.28 | <보고 및 심의사항> 1)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2) 외부감사인의 2018년도 핵심감사사항 보고 | 보고 |

주) 주재성 사외이사위원은 2018년 12월 26일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하였습니다.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동내역 | | | |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7년 3월 ~ 2018년 3월] * 위원장: 박철 * 사내이사위원: 조용병 * 사외이사위원: 박철, 박안순, 이상경, 이흔아 [2018년 3월 ~ 2018년 5월 16일] * 위원장: 박철 * 사내이사위원: 조용병 * 사외이사위원: 박철, 박안순, 박병대, 최경록 [2018년 5월 17일 ~ 2018년 8월 15일] * 위원장: 박철 * 사외이사위원: 박철, 박안순, 박병대, 최경록 [2018년 8월 16일 ~ 현재] * 위원장: 박철 * 사외이사위원: 박철, 박안순, 이성량, 박병대, 최경록 | 2018.01.15 | 1. 사외이사 선임원칙 보완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2018.01.31 |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정 안 가결 | |
| | | |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2018.02.07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1) 사외이사 선임원칙 보완 결과 보고 2) 2017년도 사외이사 평가 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1.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02.21 |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1)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 보고 | 보고 |
| | | |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03.22 | 1. 사외이사 후보 선임원칙 보완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2018.08.17 |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2018.10.17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경로 확대 심의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2018.12.21 | 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 3. 이사회 구성 다양성 심의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 | 가결 |

(6)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동내역 | | |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7년 3월 ~ 2018년 3월] * 사외이사위원: 박철, 이만우, 이상경, 이성량, 이정일, 이흔아,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브릴, 박안순, 주재성 [2018년 3월 ~ 2018년 12월 25일] * 사외이사위원: 박철, 김화남, 박병대, 박안순, 이만우, 이성량, 주재성, 최경록,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브릴 [2018년 12월 26일 ~ 현재] * 사외이사위원: 박철, 김화남, 박병대, 박안순, 이만우, 이성량, 최경록,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브릴 ※ 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됨 | 2018.02.21 | 1.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호선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2.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3. 감사위원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가결 |

주) 주재성 사외이사위원은 2018년 12월 26일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하였습니다.

(7)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동내역 | | |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 지배구조및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 [2017년 3월 ~ 2018년 3월] * 위원장: 이상경 * 사내이사위원: 조용병 * 사외이사위원: 이상경, 이성량,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브릴, 이정일 | 2018.02.20 | 1. 지배구조 관련 규정 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02.21 | <보고사항> 1) 2017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세부절차 보고 | 보고 |
| | | 2018.03.22 | 1.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 가결 |
| | [2018년 3월 ~ 현재] * 위원장: 박병대 * 사내이사위원: 조용병 * 사외이사위원: 박병대, 김화남, 박철,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브릴 | 2018.05.17 | 1. 2017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안) 심의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2. 2018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3. 2018년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개발계획(안) 심의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보고사항> 1) 2018년 1분기 성과분석회의 자회사별 Scale-up Board 보고 | 보고 | |
| | 2018.08.16 | 1. 그룹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가결 | |

(8) 사회책임경영위원회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동내역 | | |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 사회책임경영 위원회 | [2017년 3월 ~ 2018년 3월] * 위원장: 주재성 * 사내이사위원: 조용병 * 사외이사위원: 주재성, 박안순, 이만우, 히라카와 유키 | 2018.03.22 | 1.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2018.05.18 | 1. 「신한금융그룹 환경경영규범」 개정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보고사항> 1. 신한금융그룹 「희망사회 프로젝트」 추진현황 보고 2. 2017 그룹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보고 3. 그룹사 CEO 「2020 CSR 전략목표」 평가안 보고 | 보고 |
| | [2018년 3월 ~ 현재] * 위원장: 이성량 * 사내이사위원: 조용병 * 사외이사위원: 이성량, 박안순, 이만우, 히라카와 유키 | 2018.10.17 | 1. 그룹 지속가능 금융 리더십 구축에 관한 사항 | 가결 |
| | | | <보고사항> 1. 그룹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보고 | 보고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고 |
|-------|-----|--------|------|---------------|----|
| 사외이사 | 9 | 3,500 | 648 | 65 | - |
| 비상임이사 | 1 | | 0 | 0 | |

※ 인원수: 2018년 12월말 기준, 1인당 평균 지급액: 지급총액/연환산인원수

주총승인금액: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 총한도 기준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경제환경변화

(가) 글로벌 경제 전망

2018년 글로벌 경제는 상반기 중 회복세가 이어지다가 하반기에는 성장모멘텀이 약화되는 '상고하저(上高下低)'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주요국의 통화완화 및 재정확장 정책과 이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실물경기 전반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상반기 중 선진국은 미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신흥국은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이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러시아, 브라질 등 원자재 수출국은 경기부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 하반기 들어서는 주요국들의 성장세가 일제히 둔화되는 모습을 있는데다 美 금리인상 및 美中 무역분쟁 장기화 등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美 연준의 금리인상과 ECB의 양적완화 축소 등 글로벌 통화긴축 강화로 주요국의 주가 약세 전환, 부동산가격 상승세 둔화 등 자산가격 상승세도 꺾였고, 이는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19년 중에도 이러한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주요국 경제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미국 경제가 2019년 중에는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美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및 통상여건 악화 등으로 신흥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2019년 중 글로벌 경제는 완만하게 하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글로벌 경기의 재반등을 가져올 상승 동력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글로벌 경기하향 흐름은 2~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 경제는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하에 따른 기업투자와 민간소비 개선 효과가 확대되면서 2019년에도 잠재성장률(2.0% 내외)을 상

회하는 2%대 초반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美 실업률이 1960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고용부족이 나타나는 가운데 인플레이 압력은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9년 하반기 이후에는 미국 경제가 하향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유로존 경제는 양적완화가 종료되는 데다 2019년 하반기 경에는 정책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英 Brexit 및 이탈리아 재정문제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경제는 기업실적이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2020도쿄올림픽을 앞둔 인프라투자 확대에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이 시행될 경우에는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는 기업부채 및 부동산 버블, 그림자금융 문제 등 부채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차질 등으로 성장률이 6%대 초반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中 정부의 대응여력을 감안하면 2019년 중 중국 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데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은 투자 주도 성장을 저해하여 중국 경제의 하락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018년 중 국내 경제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였지만, 투자감소 등 내수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이 극도로 부진하여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및 SOC투자 축소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크게 부진한 데다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 제품에 대한 대내외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생산과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도 불구하고, 신규 취업자수가 급감하는 등 고용부진이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미쳐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소비회복 모멘텀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17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GDP성장률도 1분기 1.0%(전기대비)에서 2분기 및 3분기 중에는 각각 0.6%로 둔화되었다가 4분기 들어 기저효과에 힘입어 다시 1.0%로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결국 2018년 중 국내 경제는 전년(3.1%)대비 하락한 2.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 중에도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데다 수출 및 소비회복 모멘텀이 악화되면

서 국내 경기하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국내 경제를 지탱하였던 반도체 수출은 중국의 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유지보수 중심의 보수적인 설비투자 경향으로 투자여건 또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급부족 현상이 해소되면서 과거 5년간 크게 증가하였던 주택투자는 2019년 중에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소비의 경우에도 소득주도 성장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및 저성장 등 구조적인 소비제약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고용여건 악화와 가계부채 상황 부담으로 증가세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나타나고 있는 수출의 급락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며,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고용부진 추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생활형 SOC투자 등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경기급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2019년 중 국내 경제는 재정확대 정책이 내수부진 및 수출둔화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경기회복의 관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2019년 중 국내 경제는 재정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및 설비/건설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018년보다 낮은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美中 무역분쟁 지속 등 교역환경 악화, 美 금리인상 속도 관련 불확실성, 고용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은 향후 국내 경제에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국내 채권시장은 美 연준의 잇단 금리인상에 따른 韓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반인상 기대감과 주식시장 호조 영향 등으로 상반기 중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경기둔화 우려로 금통위의 금리인상이 지연되면서 하반기 중에는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韓 금통위는 가계부채 규모가 1,500조원을 상회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데다 韓美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 등으로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인상(1.50% → 1.75%)하였지만, 금리인상 이후 경기둔화 우려로 당분간 추가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2019년 중에는 美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 관련 불확실성이 국내 채권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상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경기 정점 통과 인식으로 美 FOMC 점도표

상 2019년 기준금리 인상 횟수 전망이 기존 3회에서 2회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그 동안 매파적이었던 제롬 파월 美 연준 의장의 발언도 비둘기파적으로 바뀌면서 2019년 연준의 금리인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금리도 美 연준의 금리인상 여부 및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018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과 북한 리스크 완화 등에 힘입어 상반기 중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美中 무역분쟁 확대와 韓美 간 경기 차별화 및 금리차 확대 등으로 환율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에는 美中 무역협상 전개과정 및 美 연준의 금리인상, 주식시장 방향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들어서도 美中 무역협상 결과 및 美 통화정책방향, 北美 협상 전개과정 등에 따라 상당기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美 재정적자 확대 및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긴축에 따른 달러화 약세 전환 등으로 2019년 하반기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19년 원/달러 환율은 美 달러가치 등락에 연동되면서 '상고하저(上高下低)'의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금융산업 동향

(가) 은행업

① 산업의 특성

은행업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은행의 업무는 예·적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및 내외국환 업무 등과 같은 고유업무와 보증, 어음인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과 같이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수업무, 그리고 신탁업무 등과 같이 타 법령 등에 의해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경영업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건전성, 수익성

국내은행들은 2018년에도 자산건전성 개선세가 지속되고 수익성도 이자이익을 중심으로 제고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이어 갔습니다. 국내은행의 자산규모는 '08년 금융 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은 1,600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으로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부실자산 정리 노력과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힘입어 부실채권비율은 '18.9월말 기준 0.96%로 전분기말 대비 0.10%p 하락하여 '15년 이후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③ 경쟁요소

2019년도부터 바젤Ⅲ 및 가계 부문 경기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신예대출 규제 등 정부에서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은행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고령사회 진입, 다양한 생활금융 플랫폼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디지털화의 가속 등으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고객 확보 경쟁은 업의 경계가 해체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금융에서의 경쟁도 단순한 가격 위주에서 생활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더욱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경쟁 구도가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영역 확대 및 인가단위 개선을 통한 신규 시장진입자의 진출 가속화의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경쟁구도를 더욱 복잡하고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대표되는 금융정책의 본격 시행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벤처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도 은행간 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한편, 향후 금리상승 등에 따라 일부 취약 가계 및 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여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 수준에 따라 경영성과의 차별화가 예상됩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인허가 등 은행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

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나) 신용카드업

① 산업의 특성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재화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가로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신용카드사는 상기 신용공여 외에도 회원들에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신용대출 서비스 및 기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 등 경기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와 IT기술의 발달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특수성을 지닙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건전성, 수익성

2018년에 개인카드 이용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며, 연체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수익성 측면에서는 업계의 비용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달 코스트 상승세 전환 등으로 인해 경상적인 수익성은 약화세를 이어갔습니다.

2019년은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사 마케팅 축소, 민간소비심리 약화 등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카드 이용액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대출 총량규제 지속 등으로 수익성 또한 약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급격한 금리 상승시 취약한 차주 중심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경쟁요소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업의 특성상 상품 서비스의 차별화도 쉽지 않아 신용카드회사들은 매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절벽의 도래로 고객기반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존 신용카드사 외 인터넷전문은행, P2P업체 등의 본격적 대두로 업계는 새로운 경쟁 환경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격변하는 영업 환경과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에 대한 경계와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업에 대한 외형 확대 억제와 서민금융 수수료 인하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최근 지급결제시장에서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의 진입을 장려하는 정책은 강화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금융투자업

① 산업의 특성

금융투자업은 자금의 수요자(기업, 정부)가 자금의 공급자(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여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직접금융 방식의 금융산업입니다. 증권의 인수(Underwriting), 투자자의 증권 매매를 수행하는 위탁매매(Brokerage), 고유자금으로 증권을 사고 파는 자기매매(Dealing), 기타 부수/경영 업무(투자자문, 일임, 신탁 등)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최근 금융투자업계는 기존의 브로커리지 수익에 의존한 수익구조를, IB(투자은행부문), WM(자산관리) 등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증시 거래대금에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기업금융의 경우, 현재 전통적인 기업금융 부문 외에 인수금융과 해외 부동산을 활용한 구조화금융 영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기업금융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당국의 기업금융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증권사 기업금융 수익성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경쟁요소

금융투자업은 비슷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등으로 인해 차별화 가능 요소가 제한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61개 업체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또한, 레버리지 비율 규제로 인해 레버리지 비율 900% 이상인 중대형사들의 경우 자본을 확충하거나 부채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사의 시장 집중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들 중 일부가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하였으나, 사업 초기인 만큼 평잔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기 전까지 손익 기여도는 아직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계 증권사의 경우 후발 증권사가 WM/CIB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 은행/금융투자 협력모델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카카오페이, 토스 등 ICT 업체들의 증권업 진출은 향후 온라인 자산관리 시장 경쟁을 야기할 전망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형 금융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선진화에 따른 점진적인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라) 생명보험업

① 산업의 특성

생명보험업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사업입니다.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점에서 손해보험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여러 기준으로 나뉘어지는데 보험사고에 따라서는 크게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구분하고 가입목적에 의해서는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수익은 위험률차익(실제위험률 < 예정위험률), 이자율차익(실제수익률 > 예정이자율), 사업비차익(실제사업비 < 예정사업비)의 3가지 이원을 통해 창출됩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생명보험업 전반적으로 시장성숙 및 종신보험 신규수요 둔화, 건강보험의 제한적 성장 등 보험영업 부문의 성장성 정체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향후 IFRS17(新 국제회계기준)과 함께 도입 예정인 K-ICS(新 지급여력 제도)에 의해 자본확충 부담 및 영업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리차 역마진 위험은 아직 존재하나 금리가 상승 전환되면서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이 전망됩니다.

③ 경쟁요소

생명보험업은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은 정체되고 있지만 보장성 상품 위주의 판매 전략으로 신계약 마진 등 내재가치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위험률차익 및 사업비차익의 안정적인 관리는 물론 IFRS17 도입, 자본규제 강화 등 제도변화에 따른 자본확충,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수익 개선 등 수익 기반 강화와 자본 적정성 확보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보험업은 상법(보험편),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법 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규칙, 보험 계약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마) 자산운용업

① 산업의 특성

자산운용업은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과 자산(부동산 등)을 투자자(보험사, 연기금, 기관 및 개인투자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정해진 투자 목적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자산운용사의 총 수탁고(AUM)는 2018년 9월말 기준 1,026조원(펀드 548조원, 투자일임 468조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미성숙한 상황입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2018년 자산운용업계는 전체 수탁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수탁고의 증가에 힘입어 2018년 3분기 영업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한 19,66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2018년 12월말 기준, 펀드 순자산(NAV)은 544.3조원으로 2017년말 506.9조원 대비 37.4조원(+9.6%)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모펀드 시장의 공모시펀드 시장 역전세

가 심화된 가운데, 공모펀드는 MMF 및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감소하며 213.6조원을 기록하고, 사모펀드는 부동산특별자산 등 실물펀드 및 혼합자산에서 투자가 증가하며 330.7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주식형펀드는 국내외 증시 불안에 따른 평가액 하락으로 펀드 순자산(NAV)이 전년말 대비 2.7조원 감소한 79.9조원을 기록하였고, MMF 잔액은 자금 수요로 인한 대기성 자금 규모 감소로 전년말 대비 7.7조원 감소한 90.3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실물펀드 순자산(NAV)은 대체투자 선호 지속으로 전년말 대비 28.7조원 증가한 147.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금리상승 및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투자자들의 $+\alpha$ 수익 추구 성향은 심화되고, 전통자산에서 추가수익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기관들의 해외 및 대체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업계는 사모펀드와 대체자산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경쟁요소

자산운용업은 경기 변동 및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지 않은 산업입니다. 또한 자산운용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산업 내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자산운용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바)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용카드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 업종으로 수신 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과거 신용카드업법, 할부금융업법, 시설대여업(리스)법, 신기술금융업법의 4개 개별법이 통합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9월말 현재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102개사가 사업을 영위중에 있습니다. (카드사 : 8개사, 할부금융사: 21개사, 리스사: 25개사, 신기술금융사: 48개사)

할부/리스시장은 취급 품목이 다양하고 대상고객 범위가 넓어 틈새시장 발굴 및 고객 확보가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업권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시중은행의 오토론 및 중금리 대출상품 취급이 확대되고 P2P업체 및 대부업체들의 개인신용대출 시장 영역이 커지는 등 타 금융업권과의 사업영역 상충에 따른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금융(할부, 리스, 오토론) 취급액 증가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신규 투융자 증가로 전체 업권의 외형 및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경쟁심화에 따른 운용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사) 저축은행업

저축은행업은 서민 및 중소 상공인들을 주 고객층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며, 업계 전반의 경영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낮은 저축은행 대출자산 특성 상 최근 국내 경기상황 및 가계부채 이슈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은 2018년 중 시범적으로 도입한 DSR(Debt Service Ratio)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게 되는 등 정책변화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며 경기상황의 불확실성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걸쳐 보다 강화된 리스크 관리역량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경쟁자들의 출현 등으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대고객 영업활동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IT 콘텐츠 발굴 및 디지털 신기술 개발 등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ICT의 발달과 규제 완화 등으로 핀테크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로보 어드바이저,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ICT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회사의 ICT 관련 투자와 핀테크 기업 육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ICT/핀테크 기업과

의 제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ICT 발달에 따라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산업의 ICT 인프라에 대한 안정성과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은 운용사, 자문사, 기관투자자들을 고객으로 펀드의 기준가 산출, 펀드 성과 측정, 트레이딩 시스템 제공, 법정보고서 제출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총 11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사무관리 총자산 규모는 일반펀드(공모/사모펀드) 기준 634조원입니다. 사무관리 자산 규모는 자산운용시장의 성장 흐름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한 해 동안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의 경우 단기 유동성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펀드의 순자산은 전년 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업계의 수익성은 펀드 시장 전반의 보수율 인하 요구와 상대적으로 보수율이 높은 주식형 펀드 순자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정체하는 추세이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따른 헤지펀드 시장과 저성장 고령화 기조 및 정부 정책 시행에 따라 REITs, PEF 등 대체 투자자산 시장이 확대되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 채권추심업

신용정보업은 채권추심, 신용조사, 신용조회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이 중 '채권추심업무'는 부실채권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 및 관리를 통해 채권자의 유동성 확보 및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촉진하는 업무로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체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신용조사업무'는 금융기관 등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거래 당사자의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로 서류수령대행 등 금융 부대 서비스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신용정보업의 전체 산업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지난 수년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 특히, 주력 부문인 채권추심업무(2018년 상반기 기준 전체 영업수익 대비 비중 4.2%)는 2014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IFRS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확대, 공공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확대, 개인정보 및 채무자 보호 정책 강화, 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추심수수료율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2019년에도 개인정보 및 채무자 보호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한 신용정보업자의 채권매입 허용 및 조세채권 위임 가능 여부에 따라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추심환경 악화에 따라 비추심(신용조사 등) 및 겸업 사업부문에 대한 시장확대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 사모투자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한 투자이익 실현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투자자를 사모로만 모집하는 특수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004년 말 국내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EF는 2018년 9월 말 현재 530개이며, 투자약정액은 약 69조원 규모입니다. PEF의 투자약정액이 증가하면서 투자형태에 있어서도 기업인수(Buy-out)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영업권 등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타) 부동산자산관리업

자산관리회사(AMC)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리츠를 운영하는 회사로 리츠자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 대상 부동산 발굴, 투자자 유치, 부동산 매입, 임차인 유치, 시설관리, 부동산 매각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리츠시장은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2018년

12월 31일 기준 총 25개 자산관리회사(AMC)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체투자 수요 증가 및 리츠 관련 정부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시장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들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신한금융지주 사업비전 및 경영방침

신한금융그룹은 2001년 신한금융지주가 출범한 이후 ▲은행과 비은행간의 균형있는 성장, ▲신성장동력 발굴과 사업모델 차별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글로벌 수준의 역량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World Class Financial Group 으로 도약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룹 중기 지향점을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 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0 SMART Project' 를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Project 추진 1단계로서 그룹 Matrix 확장(GIB/글로벌/GMS/WM 등), 자회사 신규 설립(신한리츠운용), 국내외 우량 금융회사 인수계약 체결(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아시아신탁/Prudential Vietnam Finance Company 등), 디지털플랫폼 업그레이드(신한플러스/신한SOL 등) 등 그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자본시장, 글로벌, 디지털 분야에서의 신성장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특정 회사/지역/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그룹 전반에서 조화로운 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Project 2단계 추진동력인 '그룹 One Shinhan 경쟁력' 을 바탕으로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창조적 실행력' 을 통해 '금융혁신 선도력'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One Shinhan 가치창출 확대

그룹 One Shinhan 플랫폼인 사업부문(Matrix)을 고도화하고 그룹 플랫폼마케팅 성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편입 그룹사와 기존 그룹사/사업부문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퇴직연금, 기관, 기업 등 중점 협업영역에 그룹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룹 One Shinhan 대표 상품/서비스 및 실행지원 체계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2. 미래성장 포트폴리오 확장

그룹 신규/전략 사업라인의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비이자이익 창출영역의 핵심인 자

산관리 모델의 전 과정을 Zero-base에서 리뉴얼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룹의 자본, 인력, 비용 등 리소스 배분을 최적화하여 운영효율성 및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 Global 질적 성장성 확보

글로벌 네트워크의 비즈니스모델을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 견고히 하고 핵심역량의 현지화 수준을 고도화하여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국내 그룹사와의 연계사업 및 글로벌 현지 네트워크간의 협업영역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4. Digital Transformation 성과 확대

디지털을 활용하여 기존 비즈니스모델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제로페이 등장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혁신사업모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내 성공모델의 글로벌 확산, 글로벌 현지 디지털 기업과의 신사업 추진도 모색하겠습니다.

5. 지속가능경영(ESG) 체계 확립

그룹의 미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추가된 과제로서 생산적·포용적금융 등 금융 본업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의 이행체계를 구현하고, 그룹 'ECO Transformation 2020' 로드맵 추진을 통해 친환경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공동체의 일원인 기업시민으로서 그룹과 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희망사회 프로젝트', '사회적기업 생태계 육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 고도화된 리스크관리 역량 확산

경제, 사회, 정부정책, 규제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 역량을 고도화하고, 그룹의 신성장, 글로벌부문의 리스크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환경사회 리스크 등 비재무적 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ICT인프라 안정성과 완벽한 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 시대를 선도하는 신한문화 확장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확장하는 한편 신한문화의 기동체계를 S.A.Q(Speed-Agility-Quickness) 관점에서 혁신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룹

경영리더/여성리더 육성체계를 그룹 내부에 제대로 정착시키고 그룹의 핵심사업 라인을 이끌 우수인재 확보 및 육성/리텐션체계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18년 연결기준으로 3조 1,567억원(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그룹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증가 등으로 전년도 2조 9,188억원 대비 8.2% 증가하였습니다. 그룹 이자이익은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적정 대출 성장과 마진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하였고, 비이자이익 또한 수수료 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의 국외점포 당기순이익은 3,215억원(연결조정 등 감안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6.8% 증가하며 그룹 당기순이익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그룹사 당기순이익을 보면 신한은행은 2018년 당기순이익 2조 2,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 증가하였으나 비은행부문에서 신한카드가 전년도 일회성 손익 소멸 효과로 5,194억원 실현하며 전년 대비 43.2% 감소하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2,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하였으며 신한생명은 1,310억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습니다. 신한캐피탈은 1,0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사업부문 | 내 용 | 계열회사 |
|-----------------|-------------------------------------|------------|
| 은행업 부문 |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은행, 제주은행 |
| 신용카드업 부문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카드, 신한은행 |
| 금융투자업 부문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금융투자 |
| 생명보험업 부문 |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생명보험 |
| 자산운용업 부문 |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콜거래 업무 | 신한BNPP자산운용 |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 | 시설대여 및 렌탈업무 | 신한캐피탈 |
| 저축은행업 부문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 신한저축은행 |
|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부문 | 금융IT서비스 업무 | 신한DS |

| | | | |
|----------|-----------------|--------------------------------------------------|----------|
| 기타 부문 |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문 | 펀드 일반사무관리 업무 및 부대업무 | 신한아이타스 |
| | 채권추심업 부문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에 따른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의 업무 | 신한신용정보 |
| | 사모투자업 부문 |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 신한대체투자운용 |
| | 부동산자산관리업 부문 |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 | 신한리츠운용 |

(2) 시장점유율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당사와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등이 있으며, 사업포트폴리오와 계열회사 구조가 상이하고 기타 금융업과의 관계 등 특수성에 따라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시장의 특성

상기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2) 금융산업 동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2018년 9월 5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의 지분 59.15%(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2월 1일 해당 주권 인수하며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31일 부동산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주)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생명보험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 인수를 통하여 당사의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 조직도(2018년말 기준)



조직도 (2018)

※ 사업의 개요에 기재된 내용은 민간 경제연구소 및 국가기관 발표자료 등을 기초로 당사에서 분석한 예측자료이므로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주)신한금융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이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2019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 2가 120번지)
신한은행 20층 대강당

3.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8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8명 선임)

제3-1호 의안 : 이사후보(기타비상무이사) 진옥동

제3-2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안순

제3-3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철

제3-4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변양호

제3-5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만우

제3-6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윤재

제3-7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필립 에이브릴

제3-8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허용학

제3-9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히라카와 유키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성재호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선임)

제5-1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이만우

제5-2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이윤재

제6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19년3월17일(일) ~ 2019년3월26일(화)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은행 · 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8. 기타사항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 관리, 2)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3) 자회사등과 공동상품의 개발 판매 및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12월말 현재 (주)신한은행, 신한카드(주), 신한금융투자(주), 신한생명보험(주), 신한BNPP자산운용(주)등 14개의 자회사 및 25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영업현황]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18년 연결기준으로 3조 1,567억원(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그룹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증가 등으로 전년도 2조 9,188억원 대비 8.2% 증가하였습니다. 그룹 이자이익은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적정 대출 성장과 마진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하였고, 비이자이익 또한 수수료 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의 국외점포 당기순이익은 3,215억원(연결조정 등 감안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6.8% 증가하며 그룹 당기순이익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그룹사 당기순이익을 보면 신한은행은 2018년 당기순이익 2조 2,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 증가하였으나 비은행부문에서 신한카드가 전년도 일회성 손익 소멸 효과로 5,194억원 실현하며 전년 대비 43.2% 감소하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2,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하였으며 신한생명은 1,310억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습니다. 신한캐피탈은 1,0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하였습니다.

[별도기준 영업현황]

당사는 2018년 중 자회사로부터 2017년에 대한 결산배당으로 1조 4,077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신한 브랜드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는 신한 브랜드 사용

자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2018년 중에는 498억원의 브랜드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별도 재무제표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재무제표

1)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8(당)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17(전)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식 | 제18(당) 기말 | 제17(전) 기말 |
|------------------------|---------------|-------------|-------------|
| 자 산 | | | |
| I.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4, 8, 24, 61 | 17,348,626 | - |
| II. 현금 및 예치금 | 4, 9, 24, 61 | - | 22,668,598 |
| I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 10, 24, 61 | 43,534,766 | - |
| IV. 단기매매금융자산 | 4, 11, 24, 61 | - | 28,464,296 |
| V.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4, 12, 24, 61 | - | 3,579,057 |
| VI. 파생상품자산 | 4, 13, 61 | 1,793,613 | 3,400,178 |
| V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4, 16, 24, 61 | 38,314,170 | - |
| VIII. 매도가능금융자산 | 4, 17, 24, 61 | - | 42,116,937 |
| IX.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4, 16, 24, 61 | 28,478,136 | - |
| X. 만기보유금융자산 | 4, 17, 24, 61 | - | 24,990,680 |
| XI.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4, 14, 24, 61 | 299,609,472 | - |
| XII. 대출채권 | 4, 15, 24, 61 | - | 275,565,766 |
| XIII. 유형자산 | 18, 24 | 3,003,886 | 3,021,772 |

| 과 목 | 주식 | 제18(당) 기말 | 제17(전) 기말 |
|-----------------------|-----------|-------------|-------------|
| XIV. 무형자산 | 19, 58 | 4,320,134 | 4,273,321 |
| XV.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20 | 671,330 | 631,294 |
| XVI. 당기법인세자산 | | 45,100 | 25,015 |
| XVII. 이연법인세자산 | 51 | 426,965 | 592,283 |
| XVIII. 투자부동산 | 21 | 474,820 | 418,303 |
| XIX. 기타자산 | 4, 22, 61 | 21,571,918 | 16,551,958 |
| XX. 매각예정자산 | | 7,574 | 7,550 |
| 자산 총계 | | 459,600,510 | 426,307,008 |
| 부 채 | | | |
| I. 예수부채 | 4, 25, 61 | 265,000,190 | 249,419,224 |
|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4, 26, 61 | 1,420,306 | - |
| III. 단기매매금융부채 | 4, 27, 61 | - | 1,848,490 |
| IV.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4, 28, 61 | 8,535,800 | - |
| V.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4, 29, 61 | - | 8,297,609 |
| VI. 파생상품부채 | 4, 13, 61 | 2,439,892 | 3,487,661 |
| VII. 차입부채 | 4, 30, 61 | 29,818,542 | 27,586,610 |
| VIII. 사채 | 4, 31, 61 | 63,227,699 | 51,340,821 |
| IX. 확정급여부채 | 32 | 127,348 | 7,144 |
| X. 총당부채 | 33 | 508,416 | 428,958 |
| XI. 당기법인세부채 | | 430,306 | 348,830 |
| XII. 이연법인세부채 | 51 | 22,020 | 9,982 |
| XIII. 보험계약부채 | 34 | 26,218,882 | 24,515,288 |
| XIV. 기타부채 | 4, 35, 61 | 25,199,679 | 25,312,773 |
| 부채 총계 | | 422,949,080 | 392,603,390 |
| 자 본 | 36 | | |
| 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 35,725,625 | 32,820,221 |
| (1) 자본금 | | 2,645,053 | 2,645,053 |
| (2) 신종자본증권 | | 1,531,759 | 423,921 |
| (3) 자본잉여금 | | 9,895,488 | 9,887,335 |
| (4) 자본조정 | | (552,895) | (398,035) |

| 과 목 | 주석 | 제18(당) 기말 | 제17(전) 기말 |
|---------------|--------|-------------|-------------|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1 | (753,220) | (529,734) |
| (6) 이익잉여금 | 58, 61 | 22,959,440 | 20,791,681 |
| II. 비지배지분 | | 925,805 | 883,397 |
| 자본 총계 | | 36,651,430 | 33,703,618 |
| 부채와 자본 총계 | | 459,600,510 | 426,307,008 |

2)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8(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17(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18 (당) 기 | | 제 17 (전) 기 | |
|---------------------------------------|----|-------------|-----------|-------------|-------------|
| I. 영업이익 | | | 4,499,414 | | 3,830,026 |
| (1) 순이자손익 | 38 | | 8,580,089 | | 7,842,953 |
| 1. 이자수익 | | 13,572,456 | | 11,798,654 |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및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 12,891,850 | |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680,606 | | - | |
| 3) 대어금 및 수취채권과 투자유가증권 | | - | | 11,250,919 | |
| 4) 단기매매유가증권 | | - | | 547,735 | |
| 2. 이자비용 | | (4,992,367) | | (3,955,701) | |
| (2) 순수수수료손익 | 39 | | 1,938,997 | | 1,710,954 |
| 1. 수수료수익 | | 3,295,256 | | 4,044,955 | |
| 2. 수수료비용 | | (1,356,259) | | (2,334,001) | |
| (3) 보험손익 | 34 | | (471,699) | | (460,039) |
| 1. 보험수익 | | 4,398,738 | | 4,599,808 | |
| 2. 보험비용 | | (4,870,437) | | (5,059,847) | |
| (4) 배당수익 | 40 | | 87,826 | | 257,306 |
|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41 | | 414,593 | | - |
|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_당기손익조정접근법 | 10 | | 74,944 | | - |
| (7) 단기매매금융상품관련손익 | 42 | | - | | 963,223 |
|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관련손익 | 43 | | (21,210) | | - |
| (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손익 | 44 | | - | | (1,059,826) |
| (10) 외환거래손익 | | | 194,136 | | 364,006 |
| (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 16 | | 20,554 | | - |
| (12)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 17 | | - | | 499,187 |
| (1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손익 | 16 | | (9) | | - |

| 과 목 | 주식 | 제 18 (당 기) | | 제 17 (전 기) | |
|---------------------------------------|--------|------------|-------------|------------|-------------|
| (14)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45 | | (747,877) | | - |
| (15) 금융상품자산손상차손 | 46 | | - | | (1,013,548) |
| 1.대손상각비 | | | - | (815,249) | |
| 2.기타금융상품손상차손 | | | - | (198,299) | |
| (16) 일반관리비 | 46 | | (4,741,575) | | (4,811,198) |
| (17) 기타영업손익 | 49 | | (829,355) | | (462,992) |
| II.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 | 20 | | 17,488 | | 20,393 |
| III.기타영업외손익 | 50 | | (50,292) | | (52,811) |
| I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4,466,610 | | 3,797,608 |
| V.법인세비용 | 51 | | 1,268,345 | | 848,403 |
| VI.당기순이익 | | | 3,198,265 | | 2,949,205 |
| VII.기타포괄손익 | 36 | | 51,292 | | (429,11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 | 122,549 | | (533,486)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161,008 | |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_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10 | (54,333) | | - | |
| (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323,127) | |
| (4)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7,407 | | (22,813) | |
| (5) 해외사업환산손익 | | 19,983 | | (194,172) | |
| (6) 현금흐름위험회피 | | (20,192) | | 15,904 | |
| (7)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8,676 | | (9,278)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 | (71,257) | | 104,372 |
|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93,098) | | 103,525 | |
| (2)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28 | | 847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22,725 | | -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 | (2,635) | | - | |
|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 | 1,723 | | - | |
| VIII.총포괄이익 | | | 3,249,557 | | 2,520,091 |
| IX.당기순이익의 귀속 | | | 3,198,265 | | 2,949,205 |
|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6, 52 | 3,156,722 | | 2,918,816 | |
| (2) 비지배지분 | | 41,543 | | 30,389 | |
| X.총포괄이익의 귀속 | | | 3,249,557 | | 2,520,091 |
|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 3,207,602 | | 2,491,251 | |
| (2) 비지배지분 | | 41,955 | | 28,840 | |
| XI. 주당이익 | 36, 52 | | | | |
|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 | | 6,579 원 | | 6,118 원 |

3)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8(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17(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자본금 | 신종 자본증권 | 연결 자본잉여금 | 연결 자본조정 | 연결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연결 이익잉여금 | 비지배 지분 | 총계 |
|------------------------------------------------|-----------|------------|-------------|------------|-----------------|-------------|-----------|------------|
| I. 2017년 1월 1일 (전기초) | 2,645,053 | 498,316 | 9,887,335 | (458,461) | (102,583) | 18,640,038 | 635,282 | 31,744,980 |
| 총포괄이익: | - | - | - | - | (427,151) | 2,917,321 | 28,840 | 2,519,010 |
| (1) 당기순이익 | - | - | - | - | - | 2,917,735 | 30,389 | 2,948,124 |
| (2) 기타포괄손익 | - | - | - | - | (427,151) | (414) | (1,549) | (429,114) |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322,056) | - | (1,071) | (323,127) |
| 2.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 | (21,552) | (414) | - | (21,966) |
| 3.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193,474) | - | (698) | (194,172) |
| 4.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 | 15,904 | - | - | 15,904 |
| 5. 특별계정포괄손익 | - | - | - | - | (9,278) | - | - | (9,278) |
| 6.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03,305 | - | 220 | 103,525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74,395) | - | 60,426 | - | (766,760) | 219,275 | (561,454) |
| (1) 연차배당 | - | - | - | - | - | (687,589) | - | (687,589) |
| (2) 신종자본증권 이자 | - | - | - | - | - | (17,678) | - | (17,678) |
| (3)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224,466 | - | - | - | - | - | 224,466 |
| (4)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298,861) | - | (1,139) | - | - | - | (300,000) |
| (5) 기타연결자본조정의 변동 | - | - | - | 61,565 | - | (61,493) | - | 72 |
| (6) 기타 비지배지분의 변동 | - | - | - | - | - | - | 219,275 | 219,275 |
| II. 2017년 12월 31일 (전기말) | 2,645,053 | 423,921 | 9,887,335 | (398,035) | (529,734) | 20,790,599 | 883,397 | 33,702,536 |
| III. 2018년 1월 1일 (당기초) | 2,645,053 | 423,921 | 9,887,335 | (398,035) | (529,734) | 20,790,599 | 883,397 | 33,702,536 |
| 사업양수도 관련 소급조정 (주식58) | - | - | - | - | - | 1,082 | - | 1,082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15호 최초 적용에 따른 조정 (주식61) | - | - | - | - | (277,011) | (251,855) | (3,155) | (532,021) |
| IV. 2018년 1월 1일 (당기초) (조정 후) | 2,645,053 | 423,921 | 9,887,335 | (398,035) | (806,745) | 20,539,826 | 880,242 | 33,171,597 |
| 총포괄이익: | - | - | - | - | 50,880 | 3,156,722 | 41,955 | 3,249,557 |
| (1) 당기순이익 | - | - | - | - | - | 3,156,722 | 41,543 | 3,198,265 |
| (2) 기타포괄손익 | - | - | - | - | 50,880 | - | 412 | 51,292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 및 처분손익 | - | - | - | - | 179,793 | - | 1,305 | 181,098 |
| 2. 당기순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손익_당기순익조정접근법 | - | - | - | - | (54,333) | - | - | (54,333) |
| 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 | 7,435 | - | - | 7,435 |
| 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20,465 | - | (482) | 19,983 |
| 5.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 | (20,192) | - | - | (20,192) |
| 6. 특별계정포괄손익 | - | - | - | - | 8,676 | - | - | 8,676 |
| 7.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92,687) | - | (411) | (93,098) |
| 8. 당기순익-공정가치측정치정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 - | - | - | - | 1,723 | - | - | 1,723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1,107,838 | 8,153 | (154,860) | - | (734,463) | 3,608 | 230,276 |
| (1) 연차배당 | - | - | - | - | - | (687,589) | - | (687,589) |
| (2) 신종자본증권 이자 | - | - | - | - | - | (40,357) | - | (40,357) |
| (3)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1,107,838 | - | - | - | - | - | 1,107,838 |
| (4) 자기주식 취득 | - | - | - | (155,923) | - | - | - | (155,923) |
| (5) 기타연결자본조정의 변동 | - | - | 8,153 | 1,063 | - | (6,517) | - | 2,699 |

| 과 목 | 자본금 | 신종 자본증권 | 연결 자본잉여금 | 연결 자본조정 | 연결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연결 이익잉여금 | 비지배 지분 | 총계 |
|-----------------------|-----------|------------|-------------|------------|-----------------|-------------|-----------|------------|
| (6) 기타 비지배지분의 변동 | - | - | - | - | - | - | 3,608 | 3,608 |
|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 : | - | - | - | - | 2,645 | (2,645) | - | - |
| V.2018년 12월 31일 (당기말) | 2,645,053 | 1,531,759 | 9,895,488 | (552,895) | (753,220) | 22,959,440 | 925,805 | 36,651,430 |

4) 연결현금흐름표

연결현금흐름표

제 18(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17(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식 | 제 18(당) 기 | 제 17(전)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6,270,486) | 1,021,334 |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4,466,610 | 3,797,608 |
| (2) 손익조정사항 | | (8,667,914) | (8,100,259) |
| 1. 이자수익 | 38 | (13,572,455) | (11,798,654) |
| 2. 이자비용 | 39 | 4,992,367 | 3,955,701 |
| 3. 배당수익 | 40 | (87,826) | (257,306) |
| (3) 현금유출입이없는손익항목 | | 3,136,221 | 4,103,957 |
| 1. 수수료손익 | | 176,932 | 169,640 |
| 2. 보험손익 | | 2,080,509 | 2,571,094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 손익 | 41 | 71,888 | - |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 손익_당기손익조정접근법 | 10 | (74,944) | - |
| 5. 단기매매금융상품관련손익 | 42 | - | (334,133) |
| 6. 외환거래손익 | | 377,632 | (87,384) |
|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관련손익 | 43 | (388,100) | - |
| 8.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손익 | 44 | - | 231,772 |
| 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 16 | (20,554) | - |
| 1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 17 | - | (499,187) |
| 1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처분손익 | 16 | 9 | - |
| 12.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45 | 747,877 | - |
| 13. 대손상각비 | 46 | - | 815,249 |
| 14. 기타금융상품손상차손 | 46 | - | 198,299 |
| 15. 종업원급여 | | 155,671 | 232,709 |
| 16. 감가상각비및기타상각비 | 46 | 301,916 | 253,344 |
| 17. 기타영업손익 | | (278,274) | 602,027 |
| 18. 관계회사 이익에 대한 지분 | 20 | (17,488) | (20,393) |

| 과목 | 주석 | 제 18(당) 기 | | 제 17(전) 기 | |
|--------------------------|--------|--------------|--------------|--------------|--------------|
| 19. 기타영업외손익 | | 3,147 | | (29,080) | |
| (4) 자산·부채의증감 | | | (12,568,538) | | (6,097,440) |
| 1.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 6,024,743 | | - | |
| 2. 예치금 | | - | | (3,347,818) |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 (3,087,272) | | - | |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 | (82,014) | | - | |
|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 (422,326) | | - | |
| 6. 단기매매금융상품 | | - | | (1,706,990) | |
|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 | 727,793 | | - | |
| 8.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 | | - | | (1,300,760) | |
| 9. 파생상품 | | 203,006 | | (488,706) | |
| 10.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27,547,413) | | - | |
| 11. 대출채권 | | - | | (19,232,732) | |
| 12. 기타자산 | | (5,128,015) | | (250,806) | |
| 13. 예수부채 | | 16,699,467 | | 15,632,957 | |
| 15. 확정급여채무 | | (145,639) | | (178,054) | |
| 15. 총당부채 | | 14,542 | | (69,584) | |
| 16. 기타부채 | | 174,590 | | 4,845,053 | |
| (5) 법인세의 납부 | | | (850,696) | | (664,286) |
| (6) 이자의 수취 | | | 13,208,601 | | 11,425,960 |
| (7) 이자의 지급 | | | (5,058,596) | | (3,710,093) |
| (8) 배당금의 수취 | | | 63,826 | | 265,887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5,562,295) | | (10,703,638)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감소 | | 2,150,860 | |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증가 | | (3,290,960) | | -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 27,074,948 | | -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 (27,000,290) | | - | |
| 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 | | - | | 29,638,281 | |
| 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 - | | (34,703,066) | |
| 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 2,093,516 | | - | |
| 8.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 (5,923,062) | | - | |
| 9.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감소 | | - | | 1,712,326 | |
| 10.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 - | | (7,033,310) | |
| 11. 유형자산의 처분 | 18, 50 | 39,202 | | 11,459 | |
| 12. 유형자산의 취득 | 18 | (142,933) | | (155,186) | |
| 13. 무형자산의 처분 | 19, 50 | 3,638 | | 9,286 | |
| 14. 무형자산의 취득 | 19 | (157,160) | | (111,257) | |
| 15. 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산의 처분 | | 189,118 | | 163,649 | |

| 과 목 | 주석 | 제 18(당) 기 | 제 17(전) 기 |
|--------------------------------|--------|--------------|--------------|
| 16. 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산의 취득 | | (227,914) | (380,213) |
| 17. 투자부동산의 처분 | 21, 50 | 15,433 | 4,869 |
| 18. 투자부동산의 취득 | 21 | (115,333) | (2,125) |
| 19.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 4,498 | 10,466 |
| 20. 기타자산의 증감 | | (311,744) | (10,435) |
| 21.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67,039 | 85,616 |
| 22.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 (26,653) | (27,629) |
| 23. 사업결합에 따른 순현금흐름 | 58, 59 | (4,498) | 83,631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3,806,527 | 10,332,453 |
| 1.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 | (300,000) |
| 2.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1,107,838 | 224,466 |
| 3. 차입부채의 순증가 | | 1,772,203 | 3,047,844 |
| 4. 사채의 발행 | | 26,487,712 | 20,006,957 |
| 5. 사채의 상환 | | (14,689,246) | (12,222,815) |
| 6. 기타부채의 증감 | | 528 | 8,498 |
| 7. 배당금의 지급 | | (714,705) | (706,565) |
| 8.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10,675 | 65,220 |
| 9.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 (16,832) | (6,509) |
| 10. 자기주식의 취득 | | (151,993) | - |
| 11. 비지배지분의 증감 | | 347 | 215,357 |
| IV.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 (30,640) | (46,035) |
| V.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 | | 1,943,106 | 604,114 |
| VI.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 54 | 6,236,650 | 5,632,536 |
| VII.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 54 | 8,179,756 | 6,236,650 |

5)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지배기업")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증권주식회사, 신한캐피탈주식회사 및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자본금은 1,461,721백만원입니다. 또한, 동년 9월 10일에는 주식을 한국거래소

에 상장하였고, 지배기업은 2003년 9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었으며, 동 일자로 지배기업은 미국주식예탁증서 (ADS: American Depositary Shares)를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과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간의 지분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회사 | 피투자회사(*1) | 소재지 | 재무제표 기준월 | 지분율(%) | |
|------------|---------------------------------------|-------|----------|------------|------------|
| | | | | 제 18(당) 기말 | 제 17(전) 기말 |
| 신한금융지주회사 | 신한은행 | 대한민국 | 12월말 | 100 | 100 |
| " | 신한카드 | " | " | 100 | 100 |
| " | 신한금융투자 | " | " | 100 | 100 |
| " | 신한생명 | " | " | 100 | 100 |
| " | 신한캐피탈 | " | " | 100 | 100 |
| " | 제주은행(*1) | " | " | 71.89 | 68.9 |
| " | 신한신용정보 | " | " | 100 | 100 |
| " | 신한대체투자운용 | " | " | 100 | 100 |
| " | 신한BNPP자산운용 | " | " | 65 | 65 |
| " | SHC애니지먼트 | " | " | 100 | 100 |
| " | 신한디에스(*2) | " | " | 100 | 100 |
| " | 신한저축은행 | " | " | 100 | 100 |
| " | 신한아이타스 | " | " | 99.8 | 99.8 |
| " | 신한리츠운용 | " | " | 100 | 100 |
| 신한은행 | 신한아주금융유한공사 | 홍콩 | " | 99.9 | 99.9 |
| " | 아메리카신한은행 | 미국 | " | 100 | 100 |
| " | 유럽신한은행 | 독일 | " | 100 | 100 |
| " | 신한캄보디아은행(*3) | 캄보디아 | " | 97.5 | 97.5 |
| " | 신한카자흐스탄은행 | 카자흐스탄 | " | 100 | 100 |
| " | 캐나다신한은행 | 캐나다 | " | 100 | 100 |
| " |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 중국 | " | 100 | 100 |
| " | SBJ은행 | 일본 | " | 100 | 100 |
| " | 신한베트남은행 | 베트남 | " | 100 | 100 |
| " | 멕시코신한은행 | 멕시코 | " | 100 | 100 |
| "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인도네시아 | " | 99 | 99 |
| 신한카드 |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 카자흐스탄 | " | 100 | 100 |
| " | 신한인도파이낸스 | 인도네시아 | " | 50 | 50 |
| " |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 미얀마 | " | 100 | 100 |
| 신한금융투자 | Shinhan Investment America | 미국 | " | 100 | 100 |
| " | Shinhan Investment Asia | 홍콩 | " | 100 | 100 |
| " |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 베트남 | " | 100 | 100 |
| " |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 인도네시아 | " | 99 | 99 |
| " | PT Shinhan Asset Management Indonesia | " | " | 75 | - |
| 신한BNPP자산운용 | Shinhan BNP ASSET MGT HK Ltd. | 홍콩 | " | 100 | 100 |
| 신한디에스 | SHINHAN DS VIETNAM CO.,LTD | 베트남 | " | 100 | - |

(*1) 연결실체는 당기 중 제주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 7,854,6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2) 당기 중 신한데이터시스템의 사명이 신한디에스로 변경되었으며, 연결실체는 당기 중 30억원 규모의 신한디에스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3) 당기 중 신한크메르은행에서 신한캄보디아은행으로 상호변경을 하였습니다.

(3) 연결대상구조화기업

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연결대상 구조화기업 | 연결대상 사유 |
|---------|--------------------------|---------------------------------------------------------------------------------------------------------------------------------------------------------------------------------------------------------|
| 신탁 | 신한은행(개발신탁) 외 17개 | 연결실체가 수탁자로서 힘을 보유하며, 수탁재산이 원금 또는 이자약정 금액에 미달하였을 때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되고,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엠펙씨울촌그린제일차 외 130개 | 연결실체가 자산인 채권의 조건변경 및 처분 등의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승인할 수 있으며,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
| 구조화금융 | SHPE홀딩즈원 유한회사 외 2개 | 부동산, 선박, 기업인수금융과 같은 구조화금융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도 발생 등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해지고 연결실체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최대신용공여자로서 단독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연결실체의 신용공여로 인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
| 투자펀드 | 코에프씨신한프런티어챔프2010-4 외 73개 | 연결실체가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조합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거나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

(*) 연결실체는 구조화기업에 대한 신용보강의 목적으로 1,397,717백만원의 ABPC매입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19년 2월 12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9년 3월 27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부채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

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 및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주석 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아래사항을 제외하고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1) 신용손실에 대한 총당금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또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과,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신용손실총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총당금의 정확성은 개별 금융상품 단위로 추정된 미래 회수예상현금흐름과 집합적인 방법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실체가 사용한 기법과 가정 및 투입 변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연결실체가 당기말 신용손실총당금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법과 가정 및 투입 변수에 대한 설명은 주석 4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5)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8년 1월 1일로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 연결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

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2018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61 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 시에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같은 접근법으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을 반영하고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도록 기준서가 개정되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기준에서는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에서 혹은 투자부동산으로 계정대체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부동산도 계정대체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 적용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연결실체는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3) |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3) 기타포괄손익으로 기인식된 관련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처분시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연결실체는 보험계약과 관련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approach)을 적용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는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했다면 당기손익으로 보고했을 금액으로 재분류하게 됩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손상 :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구분 |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 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조건과 계량적인 평가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및 주석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비교표시된 전기 연결재무제표는 동 기준서에 따라 소급재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별 장부금액의 조정내역, 손실충당금의 조정내역 등은 주석 6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7에서 기술한 대로 5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보고부문들은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 고객별 분류 및 연결실체의 조직구조에 따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최고 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2) 연결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 구조화기업

연결실체는 다수의 구조화기업을 설립하거나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조화기업이 설립된 약정의 조건을 고려할 때, 연결실체는 구조화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을 실질적으로 모두 얻게 되고 이러한 손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결구조화기업의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은 연결실체의 부채로 표시되기 때문에 구조화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없습니다.

3)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 징후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1)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는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는 다음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리스계약: 약정일의 계약상 조건 및 기타 요소를 기초로 하여 분류
- 우발부채: 현재의무로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우발부채를 인식
-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인식 및 측정
- 종업원급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 및 측정
- 보상자산: 보상대상항목과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인식 및 측정
- 재취득한 권리: 특별규정에 따라 측정
-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
- 매각예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순공정가치로 측정

또한, 연결실체는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연결실체가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에 포함된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하여 취득자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상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연결실체가 사업결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발생시킨 취득관련원가에는 중개수수료 즉 자문, 법률, 회계, 가치평가 및 그 밖의 전문가 또는 컨설팅 수수료, 내부의 취득 부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가를 포함한 일반관리원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을 등록하고 발행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연결실체는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가 취득하는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측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초과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지배지분의 추가취득은 주주간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 결과 관련 영업권 등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20%에서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지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 또한 거래가 이전된 자산에 대한 손상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5)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6)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가능한 정책

연결실체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금융자산을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거래(즉,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자산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이와 같은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

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아래 금융자산의 분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 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지분상품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분류로 선택되지 아니한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배당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채무상품

채무상품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며,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재분류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외환거래손익'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신용손실충당금전입'으로 표시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으로 표시합니다.

4)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적용가능한 회계정책

비파생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금융자산 외의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연결실체의 주요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이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지정이 허용되는 복합계약인 경우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7)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가능한 정책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위험회피회계 -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적용가능한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2)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최초거래일 손익

연결실체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인 최초거래일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이연최초거래일 손익은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기대신용손실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가능한 정책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구 분 |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전체기간은 금융상품의 계약만기까지의 기간으로서 기대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1)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나,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처분 및 상환의 경우에 대손충당금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 -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적용가능한 회계정책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1) 대출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

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발생부도율(PD: Probability of Incurred Default)과 담보 및 여신과목별 명목회수율, 부도시 발생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 후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기손익으로 직접 환입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다만, 유형자산 중 일부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가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
| 건 물 | 40년 |
| 기타의 유형자산 | 4년 ~ 5년 |

연결실체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
| 소프트웨어 | 5년 |
| 개발비 | 5년 |
| 기 타 | 5년 또는 계약기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
| 건 물 | 40년 | 정액법 |

(12) 리스

1) 리스의 분류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어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원가는 부채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 동안 배분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연결실체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자산에 대해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②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수익은 연결실체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 관련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채권의 최초인식액에 포함되고 리스기간 동안에 인식되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개설직접원가의 과목으로 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연결실체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 비파생금융부채

비파생금융부채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가능한 정책

연결실체는 금융부채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여 생길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및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점에 해당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며, 기타금융부채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됨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합니다.

비파생금융부채 -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적용가능한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당기손익인식금융 자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며, 기타금융부채에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6) 외화

1) 외화거래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

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환산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보아 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1) 지분상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연결실체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지배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신종자본증권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이 금융상품의 발행자인 경우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의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이 구분 기준에 따라 비지배지분으로 분류되며 지급되는 분배금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자본조정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으로,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8)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해고급여

연결실체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연결실체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9)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 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총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총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총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1)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총당부채에 포함되며, 공정가치는 당해 금융보증계약의 기간 동안 상각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당해 금융보증계약으로부터 기대되는 지급 금액의 현재가치)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2) 보험계약

1) 보험계약부채 및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한 투자계약부채

연결실체는 보험업법 및 관계규정에 의거 책임준비금을 설정하고 있는 바, 동 준비금은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재무상태표일 이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보고기간종료일 이후에 납입될 순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2)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3) 보증준비금

변액최저보증준비금(①)과 일반계정보증준비금(②)의 합계금액을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고있습니다.

① 변액최저보증준비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평가단위별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 i) 장래 예상되는 순손실액의 상위 30% 평균 금액
- ii) 보험종류별, 최저보증별, 보증수준별, 주식비중 한도별 표준 적립기준

② 일반계정보증준비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계정에서 운용되는 유지계약에 대하여 보장성보험상품 중 환급금,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 i) 금리시나리오별로 보증옵션을 포함하여 산출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에서 보증옵션을 제외하고 산출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평균
- ii)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취한 보증에 대한 반대급부(소멸계약 포함)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이율로 부리한 금액

1-4) 지급준비금

보고기간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으로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환급금 또는 배당금에 관한 분쟁(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에 한한다) 또는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보험금 지급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과거 경험율에 근거하여 추산된 미보고발생손해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5) 계약자배당준비금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에 총당할 목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차기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산한 계약자배당금에 예정계약소멸률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① 금리차보장준비금

1997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된 계약 중 보고기간 말 현재 1년 이상 유지된 유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이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과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발생한 배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② 위험율차배당준비금

보고기간 말 현재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산출에 적용된 예정사망율과 실제사망율과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발생한 배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③ 이차배당준비금

보고기간 말 현재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전기말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에 이차배당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단, 1997년 10월 1일 이전에 판매된 보험은 금리차보장이율을 가감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이 배당기준에 미달한 경우 전기말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에 적용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④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6년 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에 대해 전기말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에 장기유지특별배당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단, 1997년 10월 1일 이전에 판매된 보험은 금리차보장이율을 가감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이 배당기준율에 미달한 경우 전기말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에 적용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1-6)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총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1-7)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감독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합니다. 적립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적립한 보고기간 말로부터 5년내의 회계연도에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 후 잔액은 개별 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지분조정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을 당해 회계연도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으로 구분하고,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부채적정성평가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이용하여 인식한 보험부채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보험료적립금의 추가적립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재보험자산

연결실체는 출재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재보험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보험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계약조건상의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재보험자로부터 수취할 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보험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미상각신계약비

연결실체는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고 해약일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단, 예정미상각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3) 수익 · 비용의 인식

연결실체는 아래의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나,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2) 수수료수익

연결실체는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

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을 구성하는 수수료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보증, 담보와 기타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 금융부채 발행시 수취된 개설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는 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업무수탁수수료, 보증용역수수료 등 일정기간 동안 용역의 제공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주식 또는 기타증권 매매, 사업양수도의 주선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거래의 협상 또는 협상참여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등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유의적인 행위를 완료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보험료수익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에 따른 납입방법별로 보험료 회수기일이 도래되어 납입된 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보고기간말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회수기일이 차기 회계연도 이후인 보험료는 선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4)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배당수익은 지분증권의 분류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상 적정한 손익항목으로 표시됩니다.

(24) 고객충성제도

고객충성제도에 따라서, 최초의 거래대가로 수취가능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이하 '포인트')와 수수료 수익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상을 결제 대금 할인 및 사은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배분할 대가는 회수될 포인트에 대하여 제공될 금전적 혜택 등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 중 회수되는 포인트를 위해 제공되는 혜택의 공정가치는 기대회수율과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추정되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배분할 대가는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의 기대회수율과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제공될 금전적 혜택 등의 공정가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인식 금액은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총 포인트에서 금전적 대가 등과 교환되어 회수된 포인트의 상대적 크기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고객충성제도와 관련하여 보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회피불가능한 원가가 최초 매출 시점에 보상 점수에 배분된 수익으로 인식되지 못한 금액 등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손실부담계약으로 보아 그 초과금액을 총당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모법인인 지배회사와 지배회사의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자법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회사 및 연결집단의 미래 과세소득을 각각 감안하여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은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

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6) 신탁관련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대여한 자금을 신탁계정대여금, 신탁계정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타회계계정차(신탁계정미지급금)로 계상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이를 신탁업무운용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7)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8)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1-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①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 방법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 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고,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②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재무적 영향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9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회사가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593,983백만원이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면 575,606백만원입니다. 다만, 회사는 전체 (또는 일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1일 기준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가 각각 565,919백만원, 520,720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재무영향 평가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①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 방법 및 재무적 영향

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리스계약의 식별, 리스 구성요소의 분리 등의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변동되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금융리스채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최초적용일 이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하였고 최초 적용일에도 유지되는 전대리스에 대해 회사는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의 분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판단결과 해당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된다면 최초 적용일에 체결되는 새로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구체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결과 새로운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 등은 3월 1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18(당)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17(전)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18(당) 기말 | 제 17(전) 기말 |
|-----------------------|----------|------------|------------|
| 자 산 | | | |
| I.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4, 5, 34 | 48,596 | - |
| II. 현금 및 예치금 | 4, 5, 34 | - | 3 |
| I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4, 6 | 1,927,150 | - |
| IV. 단기매매금융자산 | 4, 7 | - | 255,086 |
| V.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4, 8, 34 | 1,644,666 | - |
| VI. 대출채권 | 4, 9, 34 | - | 1,234,527 |
| VII. 유형자산 | 10 | 2,484 | 1,669 |
| VIII. 무형자산 | 11 | 5,499 | 5,511 |
| IX.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12 | 25,775,432 | 25,733,159 |
| X. 이연법인세자산 | 31 | 2,633 | 3,776 |
| XI. 기타자산 | 13, 34 | 707,772 | 406,052 |
| 자산 총계 | | 30,114,232 | 27,639,783 |

| 과 목 | 주석 | 제 18(당) 기말 | 제 17(전) 기말 |
|--------------|-------|------------|------------|
| 부 채 | | | |
| Ⅰ. 차입부채 | 4, 14 | 125,000 | 5,000 |
| Ⅱ. 사채 | 4, 15 | 7,812,358 | 7,003,622 |
| Ⅲ. 확정급여부채 | 16 | 3,402 | 2,748 |
| Ⅳ. 기타부채 | 17 | 523,404 | 436,335 |
| 부채 총계 | | 8,464,164 | 7,447,705 |
| 자 본 | 18 | | |
| Ⅰ. 자본금 | | 2,645,053 | 2,645,053 |
| Ⅱ. 신종자본증권 | | 1,531,759 | 423,921 |
| Ⅲ. 자본잉여금 | | 9,494,842 | 9,494,842 |
| Ⅳ. 자본조정 | | (155,923) | (1,139) |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5,449) | (4,610) |
| Ⅵ. 이익잉여금 | | 8,139,786 | 7,634,011 |
| 자본 총계 | | 21,650,068 | 20,192,078 |
| 부채와 자본 총계 | | 30,114,232 | 27,639,783 |

2)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18(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17(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18(당) 기 | | 제 17(전) 기 | |
|-----------------|--------|-----------|-----------|-----------|-----------|
| | | | 누적 | | 누적 |
| Ⅰ. 영업이익 | | | 1,236,432 | | 755,420 |
| (1) 순이자손익 | 20 | | (155,786) | | (151,991) |
| 1. 이자수익 | 30, 34 | 32,096 | | 27,339 | |
| 1)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 32,096 | | - | |
| 2)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 | 27,339 | |
| 2. 이자비용 | 34 | (187,882) | | (179,330) | |
| (2) 순수수료손익 | 21 | | 49,409 | | 46,535 |
| 1. 수수료수익 | 30, 34 | 49,763 | | 46,720 | |

| 과 목 | 주석 | 제 18(당) 기 | | 제 17(전) 기 | |
|-------------------------------|------------|-----------|-----------|-----------|----------|
| | | 누적 | | 누적 | |
| 2. 수수료비용 | | (354) | | (185) | |
| (3) 배당수익 | 22, 30, 34 | | 1,407,674 | | 930,112 |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25 | | 23,439 | | - |
| (5) 단기매매금융상품관련이익 | 26 | | - | | 4,697 |
| (6) 외환거래손익 | | | (4,108) | | - |
| (7)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23, 34 | | (1,454) | | - |
| (8) 금융자산손상차손 | 24, 34 | | - | | (153) |
| (9) 일반관리비 | 27, 34 | | (82,742) | | (73,780) |
| II. 영업외손익 | 29 | | (78) | | (79) |
| III. 법인세차감전손이익 | | | 1,236,354 | | 755,341 |
| IV. 법인세비용 | 31 | | 1,471 | | 614 |
| V. 당기순이익 | | | 1,234,883 | | 754,727 |
| VI. 기타포괄손익 | 18 | | (839) | | 291 |
| (1)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839) | | 291 |
|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839) | | 291 | |
| VII. 총포괄이익 | | | 1,234,044 | | 755,018 |
| VIII. 주당이익 | 32 | | | |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 | 2,522원 | | 1,554원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 내 용 | 제 18(당) 기 | | 제 17(전) 기 | |
|-----------------|---------------------|-----------|---------------------|-----------|
| | 처분예정일: 2019년 3월 27일 | | 처분확정일: 2018년 3월 22일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 6,062,025 | | 5,633,341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867,521 | | 4,896,292 | |
| 2. 회계정책 변경효과 | (22) | | - | |
| 3. 신종자본증권 이자 | (40,357) | | (17,678) | |
| 4. 당기순이익 | 1,234,883 | | 754,727 | |
| II. 대손준비금환입액 | | - | | - |
| 합계 (I + II) | | 6,062,025 | | 5,633,341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877,686 | | 765,820 |
| 1. 이익준비금 | 123,489 | | 75,473 | |
| 2. 보통주배당금 | 753,041 | | 687,589 | |
| 3. 대손준비금전입액 | 1,156 | | 1,619 | |
| 4. 신종자본증권상환손실 | - | | 1,139 | |

| 내 용 | 제 18(당) 기 | | 제 17(전) 기 | |
|------------------|---------------------|-----------|---------------------|-----------|
| | 처분예정일: 2019년 3월 27일 | | 처분확정일: 2018년 3월 22일 |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5,184,339 | | 4,867,521 |

4)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18(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17(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
| I. 2017년 1월 1일 (전기초) | 2,645,053 | 498,316 | 9,494,842 | (1,418) | (4,901) | 7,585,969 | 20,217,861 |
| 총포괄이익: | - | - | - | - | 291 | 754,727 | 755,018 |
| (1) 당기순이익 | - | - | - | - | - | 754,727 | 754,727 |
| (2) 기타포괄손익 | - | - | - | - | 291 | - | 291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74,395) | - | 279 | - | (706,685) | (780,801) |
| (1) 연차배당 | - | - | - | - | - | (687,589) | (687,589) |
| (2) 신종자본증권이자 | - | - | - | - | - | (17,678) | (17,678) |
| (3)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298,861) | - | (1,139) | - | - | (300,000) |
| (4)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224,466 | - | - | - | - | 224,466 |
| (5) 자본조정의 변동 | - | - | - | 1,418 | - | (1,418) | - |
| II. 2017년 12월 31일 (전기말) | 2,645,053 | 423,921 | 9,494,842 | (1,139) | (4,610) | 7,634,011 | 20,192,078 |
| III. 2018년 1월 1일 (당기초) | 2,645,053 | 423,921 | 9,494,842 | (1,139) | (4,610) | 7,634,011 | 20,192,078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에 따른 조정(주식35) | - | - | - | - | - | (23) | (23) |
| IV. 2018년 1월 1일 (조정후) | 2,645,053 | 423,921 | 9,494,842 | (1,139) | (4,610) | 7,633,988 | 20,192,055 |
| 총포괄이익: | - | - | - | - | (839) | 1,234,883 | 1,234,044 |
| (1) 당기순이익 | - | - | - | - | - | 1,234,883 | 1,234,883 |
| (2) 기타포괄손익 | - | - | - | - | (839) | - | (839)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1,107,838 | - | (154,784) | - | (729,085) | 223,969 |
| (1) 연차배당 | - | - | - | - | - | (687,589) | (687,589) |
| (2) 신종자본증권이자 | - | - | - | - | - | (40,357) | (40,357) |
| (3) 신종자본증권발행 | - | 1,107,838 | - | - | - | - | 1,107,838 |
| (4)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155,923) | - | - | (155,923) |
| (5) 자본조정의변동 | - | - | - | 1,139 | - | (1,139) | - |
| V. 2018년 12월 31일 (당기말) | 2,645,053 | 1,531,759 | 9,494,842 | (155,923) | (5,449) | 8,139,786 | 21,650,068 |

5)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18(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17(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 18(당) 기 | 제 17(전)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432,466) | 695,187 |
| (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 1,236,354 | 755,341 |
| (2) 손익조정사항 | | (1,251,888) | (778,121) |
| 1. 이자수익 | 20 | (32,096) | (27,339) |
| 2. 이자비용 | 20 | 187,882 | 179,330 |
| 3. 배당수익 | 22 | (1,407,674) | (930,112) |
| (3) 현금유출입이 없는 손익항목 | | 509 | 3,736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25 | (7,452) | - |
| 2. 단기매매금융상품관련손익 | 26 | - | (855) |
| 3. 신용손실총당금전입액 | 8, 23 | 1,454 | - |
| 4. 금융자산손상차손 | 9, 24 | - | 153 |
| 5. 종업원급여 | | 2,881 | 3,956 |
| 6.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27 | 683 | 520 |
| 7. 외화환산손익 | | 2,970 | - |
| 8. 영업외손익 | | (27) | (38) |
| (4) 자산·부채의 증감 | | (1,671,189) | (66,339)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 (1,666,279) | - |
| 2. 단기매매금융상품 | | - | (59,205) |
| 3. 기타자산 | | (2,440) | 21 |
| 4. 확정급여부채 | | (2,258) | (2,847) |
| 5. 기타부채 | | (212) | (4,308) |
| (5) 이자의 수취 | | 30,019 | 26,368 |
| (6) 이자의 지급 | | (183,945) | (176,010) |
| (7) 배당금의 수취 | | 1,407,674 | 930,112 |
| (8) 법인세의 환급 | | - | 100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686,184) | (330,715) |
| 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증가 | | (547,630) | - |
| 2.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회수 | | 135,000 | - |
| 3. 대출채권의 증가 | | - | (555,000) |
| 4. 대출채권의 회수 | | - | 255,000 |
| 5. 유형자산의 취득 | | (1,341) | (1,214) |
| 6. 무형자산의 취득 | | (50) | (36) |
| 7. 무형자산의 처분 | | - | 132 |
| 8. 기타자산의 증가 | | (229,896) | (3,307) |
| 9. 기타자산의 감소 | | 6 | 3,710 |
| 10. 종속기업투자자산 취득 | | (42,273) | (30,00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167,278 | (364,511) |

| 과 목 | 주석 | 제 18(당) 기 | | 제 17(전) 기 | |
|--------------------|----|-------------|--------|-------------|------|
| 1. 신증자본증권의 발행 | | 1,107,838 | | 224,466 | |
| 2. 신증자본증권의 상환 | | - | | (300,000) | |
| 3. 사채의 발행 | | 2,400,000 | | 1,500,000 | |
| 4. 사채의 상환 | | (1,590,000) | | (1,080,000) | |
| 5. 사채발행비의 지급 | | (3,862) | | (2,412) | |
| 6. 차입부채의 증가 | | 125,000 | | 5,000 | |
| 7. 차입부채의 감소 | | (5,000) | | (5,000) | |
| 8. 배당금지급 | | (714,705) | | (706,565) | |
| 9. 자기주식의 취득 | | (151,993) | | - | |
| IV.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 | | | 48,628 | | (39) |
| V.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 33 | | - | | 39 |
| VI.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 33 | | 48,628 | | - |

6)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 신한캐피탈주식회사 및 신한비엔피파리바 자산운용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동년 9월 10일에 당사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고, 당사는 2003년 9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었으며, 동 일자로 당사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S:American Depositary Shares)를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 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피

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 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단기매매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부채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1) 신용손실에 대한 총당금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또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과,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신용손실총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총당금의 정확성은 개별 금융상품 단위로 추정된 미래 회수예상현금흐름과 집합적인 방법으로 기대신용손

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당사가 사용한 기법과 가정 및 투입 변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당사가 당기말 신용손실충당금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법과 가정 및 투입 변수에 대한 설명은 주석 4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5) 회계정책의 변경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8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당사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을 적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계약식별 → ②수행의무 식별 → ③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소급 적용 시 비교 표시되는 전기말 및 전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으며, 2018년 1월 1일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 시에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같은 접근법으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을 반영하고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도록 기준서가 개정되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당사는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당사의 당분기말 및 당분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비교표시된 전기말 및 전분기 재무제표는 동 기준서에 따라 소급재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별 장부금액의 조정내역, 손실충당금의 조정내역,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 등은 주석35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6) 별도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당사의 별도재무제표는 2019년 2월 12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9년 3월 27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상태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비파생금융자산

당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금융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거래(즉,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가능한 정책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자산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이와 같은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아래 금융자산의 분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지분상품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분류로 선택되지 아니한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배당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채무상품

채무상품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며,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재분류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

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외환거래손익'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신용손실충당금전입'으로 표시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으로 표시합니다.

4)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

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적용가능한 회계정책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

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가능한 정책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의 위험관리전략이나 목적이 변경되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중단시점에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위험회피회계 -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적용가능한 회계정책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기대신용손실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가능한 정책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구 분 |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전체기간은 금융상품의 계약만기까지의 기간으로서 기대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1)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당사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

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나,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처분 및 상환의 경우에 대손충당금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 -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적용가능한 회계정책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 범주별로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5년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5년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회계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비파생금융부채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가능한 정책

당사는 금융부채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여 생길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및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며, 기타금융부채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됨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적용가능한 회계정책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며, 기타금융부채에는 차입부채, 사채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0) 외화거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당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납입자본

1) 지분상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신종자본증권

당사가 금융상품의 발행자인 경우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2)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 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 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총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총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총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수익 · 비용의 인식

당사는 아래의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나,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2) 수수료수익

당사는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을 구성하는 수수료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보증, 담보와 기타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 금융부채 발행시 수취된 개설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는 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업무수탁수수료, 보증용역수수료 등 일정기간 동안 용역의 제공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주식 또는 기타증권 매매, 사업양수도의 주선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거래의 협상 또는 협상참여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등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유의적인 행위를 완료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결모법인인 당사와 당사의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자법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회사 및 연결집단의 미래 과세소득을 각각 감안하여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은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연결모법인으로서 연결법인세의 신고 납부의 주체가 됨에 따라 연결납세기준 미지급법인세 총액을 당사의 부채로 인식하고, 각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연결법인세 부담세액 개별귀속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

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17)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상환우선주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8)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2)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 방법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 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고,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재무적 영향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9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당사가 현재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 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2,328백만원이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면 2,284백만원입니다. 다만, 당사는 전체 (또는 일부)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1일 기준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가 각각 2,301백만원, 2,203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 방법 및 재무적 영향

당사는 리스제공자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리스계약의 식별, 리스 구성요소의 분리 등의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변동되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금융리스채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최초적용일 이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하였고 최

초 적용일에도 유지되는 전대리스에 대해 회사는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의 분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판단결과 해당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된다면 최초 적용일에 체결되는 새로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구체적 재무영향을 평가한 결과 새로운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재무영향 평가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 등은 3월 1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2) 재무제표 중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조 ~ 제3조 (생략) | 제1조 ~ 제3조 (현행과 동일) | - |
|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hinhangrou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전자증권법제도 시행일 이전 권리 대상 공고의무(1개월)에 따라 공고 방법 변경 |
| 제5조~제9조 (생략) | 제5조~제9조 (현행과 동일) | - |
| 제10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 제10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주식 등의 전자등록 의무화 관련 근거 신설 및 주권 종류 삭제 |
| 제11조(전환주식) ① ~ ③ (생략) (신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전환주식)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총액이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회사 발행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과 주식의 배정에 관해서는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환형전환우선주 발행근거 |
| 제12조~제15조 (생략) | 제12조~제15조 (현행과 동일) | - |
|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①~② (생략)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생략) |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①~② (생략)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생략) | 주식 등의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 |
| 제17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6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제17조(삭제) | 주식 전자등록 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주 등의 제반정보 신고할 필요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
| 제18조 (생략) | 제18조 (현행과 동일) | - |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9조(사채의 발행) ①~② (생략) ③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이 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채의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 | 제19조(사채의 발행)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삭제) | 제17조 삭제 |
| (신설) | 제19조의2(사채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제3장에서 규정하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 제3장에서 규정하는 사채 전자등록 근거 신설 |
| 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전환주식의 발행금액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전환사채 발행한도 전환주식, 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 발행한도와 합산 |
| 제21조~제23조 (생략) | 제21조~제23조 (현행과 동일) | - |
| (신설) | 제23조의2(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전환주식의 발행금액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의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고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전환가액 등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전환의 조건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세부사항은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이 회사는 제1항의 총액 범위 내에서 주주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 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그 처리 방법을 정한다. ⑤ 이 회사는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제휴회사 등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총액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
| 제24조~제35조 (생략) | 제24조~제35조 (현행과 동일) | - |
| 제36조(이사의 수) (항 신설)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신설) | 제36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항 신설 사외이사 결원시 상법상 예외규정적용 문구 조정 |
| 제37조~제50조 (생략) | 제37조~제50조 (현행과 동일) | -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진옥동 | 1961-02-21 | 기타비상무이사 | 없음 | 이사회운영위원회 |
| 박안순 | 1945-01-24 | 사외이사후보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박철 | 1946-04-27 | 사외이사후보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변양호 | 1954-07-30 | 사외이사후보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이만우 | 1954-11-22 | 사외이사후보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이윤재 | 1950-11-03 | 사외이사후보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필립 에이브릴 | 1960-04-27 | 사외이사후보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허용학 | 1958-09-10 | 사외이사후보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히라카와 유키 | 1960-10-21 | 사외이사후보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9) 명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진옥동 | 신한은행 은행장 내정자 | ○ 신한은행 부행장 ○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 해당사항 없음 |
| 박안순 | 일본 대성그룹 회장 | ○ 일본 대성그룹 회장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의장 | 해당사항 없음 |
| 박철 | 전)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회장 | ○ 한국은행 부총재 ○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회장 | 해당사항 없음 |
| 변양호 | MG파트너스 고문 | ○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 MG파트너스 고문 | 해당사항 없음 |
| 이만우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한 · 미 공인회계사 | 해당사항 없음 |
| 이윤재 | 전)(주)KorEi 대표이사 | ○ (주)KorEi 대표이사 ○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 | 해당사항 없음 |
| 필립 에이브릴 | BNP Paribas 일본 대표 | ○ BNP Paribas 증권 일본 현지법인 CEO ○ BNP Paribas 일본 대표 | 해당사항 없음 |
| 허용학 | First Bridge Strategy Ltd. CEO | ○ HKMA 대체투자부문 CIO ○ First Bridge Strategy Ltd. CEO | 해당사항 없음 |
| 히라카와 유키 | (유)프리메르코리아 대표이사 | ○ 히라카와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 ○(유)프리메르코리아 대표이사 | |

※ 기타 참고사항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5조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을 당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공시를 참고바랍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성재호 | 1960-03-18 | 사외이사후보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 총 (1) 명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성재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세계국제법협회 한국회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참고사항

상기 사외이사 선임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5조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을 당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공시를 참고바랍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이만우 | 1954-11-22 | 사외이사후보 | 없음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 이윤재 | 1950-11-03 | 사외이사후보 | 없음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 총 (2) 명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이만우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한·미 공인회계사 | 해당사항 없음 |
| 이윤재 | 전)(주)KorDi 대표이사 | ○ (주)KorDi 대표이사 ○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12(10) | 13(11)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p style="text-align: center;">35억원 주1)</p> <p>※ 이와 별도로 2018년 중 당사 주식을 기초로 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Performance Share)를 18,200주 내에서 부여하고, 향후 4년간의 경쟁사 대비 주가 상승률, 영업순이익 및 ROE 목표 달성률에 따라 2022년에 해당 부여수량 범위 내에서 지급</p> | <p style="text-align: center;">35억원 주2)</p> <p>※ 이와 별도로 2019년 중 당사 주식을 기초로 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Performance Share)를 22,178주 내에서 부여하고, 향후 4년간의 경쟁사 대비 주가 상승률, 영업순이익 및 ROE 목표 달성률에 따라 2023년에 해당 부여수량 범위 내에서 지급</p> |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 규모를 최종 확정하여 지급함 | 규모를 최종 확정하여 지급함 |

주1) 이와 별도로 2018년 중 과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의 부여한도 범위 내에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가 지급될 수 있음

주2) 이와 별도로 2019년 중 과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의 부여한도 범위 내에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가 지급될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